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회

시정 요구, 통보

제 목 : [12] 공사 감리용역 설계변경 잘못
관 계 부 서 : 송변전건설단, 배전계획처, 전 지역·건설본부
조 치 부 서 : 송변전건설단, 배전계획처, 전 지역·건설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우리 회사는 공사 감리용역 계약 후 물가변동 및 물량 증감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계 변경을 통해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의한 등락률을 산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달청 공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2023년 이전 계약된 감리용역에 대하여 월임금 기준 등락률을 계상 시 2023년 월임금은 협회에서 발표한 월평균근무일수인 20.6일을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그림 1] 조달청 공지(기재부 유권해석)

○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협회에서 발표한 월평균근무일수(20.6일)를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통신,소방)의 등락률 산정

○ 단, 월임금을 산정하지 않는 일부 비상주감리원*은 협회의 1일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등락률 산정

* 주1회 이상 감리현장에 배치하는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축사법 비상주 감리원 등

※ 등락률 예시 (전기부문 특급기술자 기준)

① 월임금 기준 등락률 산정

$$\frac{[(\text{'23년}) 325,361 \text{원} \times (\text{'23년}) 20.6 \text{일}] - [(\text{'22년}) 294,925 \text{원} \times (\text{'22년}) 22 \text{일}]}{(\text{'22년}) 294,925 \text{원} \times (\text{'22년}) 22 \text{일}} = 3.30\% \uparrow$$

② 일임금 기준 등락률 산정

$$\frac{[(\text{'23년}) 325,361 \text{원} - (\text{'22년}) 294,925 \text{원}]}{(\text{'22년}) 294,925 \text{원}} = 10.32\% \uparrow$$

끝.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감리용역 대가 산정 시에는 고급 감리원을 기준으로 계상하므로 물가 등락률은 아래와 같이 계상할 수 있다.

[표 1] 등락률 계산식(고급 감리원 월임금 기준)

$$\frac{[(\text{'23년}) 285,820 \times 20.6 \text{일}] - [(\text{'22년}) 254,591 \times 22 \text{일}]}{[(\text{'22년}) 254,591 \times 22 \text{일}]} = 5.1\% \uparrow$$

물량 증감 시 계약 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증감분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를 적용하며, 계약단가에 물가변동 등락률을 반영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 지역본부 및 건설본부에서 계약된 감리용역의 설계변경건에 대하여 물가변동률 계상과 물량증감분에 대한 단가 산정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전 본부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등락률을 산정할 때 [표 1]과 같이 2023년 월임금은 고급감리원 일노임에 20.6일을 곱하여야 하나, 2022년 기준인 22일을 곱하여 등락률이 약 7% 과다 계상되었다.

[표 2] 등락률 계산 비교

구분	등락률 계산식
誤	$\frac{[(\text{'23년}) 285,820 \times 22\text{일}] - [(\text{'22년}) 254,591 \times 22\text{일}]}{[(\text{'22년}) 254,591 \times 22\text{일}]} = 12.3\% \uparrow$
正	$\frac{[(\text{'23년}) 285,820 \times 20.6\text{일}] - [(\text{'22년}) 254,591 \times 22\text{일}]}{[(\text{'22년}) 254,591 \times 22\text{일}]} = 5.1\% \uparrow$

또한 물량증감분에 대하여 단가 산정을 할 때 물가변동률을 위와 같이 잘못 계상함에 따라 물량증가분에 대한 단가가 과다 계상되어 전사적으로 감리용역비가 879백만원 과다 계상되거나 지급되었다.

[표 3] 감리용역비 과다 계상 및 지급 현황

본부명	공사명	계약금액(誤)	수정금액(正)	차액	회수 가능	담당자
☐♣●	익명화	3,611,140,000	3,511,898,419	99,241,581	○	◁◆%
☐♣●		3,142,500,000	3,066,113,285	76,386,715	○	&◇♣
☐◎▶		1,021,655,000	970,755,000	50,900,000	○	☐▶◇
♣♣◆		697,984,201	649,127,332	48,856,869	○	☆☆☆
☐◎▶		859,010,000	814,868,000	44,142,000	X	▲♥▣
☐◎▶		1,572,740,000	1,534,805,000	37,935,000	○	♠♣▽
▲▽●		628,521,000	597,986,000	30,535,000	○	▷♠♥
☒♠♥		463,454,000	436,225,136	27,228,864	X	♠◁▣
♣♣◆		688,519,300	663,739,987	24,779,313	○	☐※★
☒♠♥		581,910,000	558,350,000	23,560,000	X	◎●▲
♠☆☆		365,970,000	342,682,354	23,287,646	○	\$◁●
♣♣◆		578,683,000	555,622,008	23,060,992	○	☐◆☎
☐◇♥		150,349,061	129,020,519	21,328,542	○	◆◁☆
◇☐☐		431,740,000	413,020,000	18,720,000	○	♥♣▣
☐◇♥		501,192,767	483,670,905	17,521,862	○	♣◁▶

▲▽●	익명화	562,316,000	545,381,084	16,934,916	X	◎●%
▲▽●		314,182,668	297,641,335	16,541,333	○	▼♣▲
♠☆\$		487,554,000	471,045,040	16,508,960	X	●※○
☒♠♥		514,631,000	498,135,578	16,495,422	X	♣☒◀
▲▽●		358,907,000	343,903,536	15,003,464	X	♠☒♥
▲▽●		280,791,275	266,007,956	14,783,319	○	▼♣▲
%☒♣		650,548,686	637,272,772	13,274,914	X	★★★
♣♣◆		1,630,231,000	1,617,098,727	13,132,273	X	□●☒
□◎▶		1,143,919,000	1,131,757,000	12,162,000	○	♠♣▽
☒♠♥		415,452,336	403,607,292	11,845,044	X	□●☒
♣♣◆		670,984,201	660,050,392	10,933,809	○	이☆☆ ☆
☒▶☒		319,266,000	309,168,966	10,097,034	X	*▲◆
♣★☒		507,410,000	498,020,000	9,390,000	X	●◀♣
☒♣●		300,250,000	291,043,851	9,206,149	X	●●◀
♣★☒		251,636,535	242,938,853	8,697,682	X	◆◆◆
☒♣●		1,119,515,000	1,110,820,053	8,694,947	X	▽◆#
♣♣◆		590,960,000	582,410,000	8,550,000	○	♣♣*

☒♠♥	익명화	296,628,402	288,233,917	8,394,485	X	▲▲▲
%☒♣		389,662,000	381,421,800	8,240,200	X	&▽■
◆◆♠		483,524,000	475,595,505	7,928,495	X	○○○
&▷★		365,549,000	357,759,338	7,789,662	X	♥♥♥
☒▶☎		333,121,000	325,397,490	7,723,510	○	%◐◆
☒◆♥		196,566,000	189,177,500	7,388,500	○	♠♠♠
▲▽◐		398,410,100	391,213,474	7,196,626	X	▲□@
♣♣◆		578,683,000	572,088,896	6,594,104	○	☒◆☎
◇☒☒		102,039,238	95,545,829	6,493,409	○	♥◐#
☒◆♥		1,253,152,000	1,246,840,554	6,311,446	○	□#♣
□◐▶		192,565,000	186,393,000	6,172,000	○	☎♠☎
♣♣◆		1,472,574,000	1,467,109,063	5,464,937	○	@☒■
♠☆\$		105,651,130	100,262,922	5,388,208	○	◀◀◀
☒♠□		226,116,570	223,173,317	2,943,253	○	☒◐□
□◐▶		610,106,000	607,400,000	2,706,000	○	▲◀\$

☞☞◆	익명화	688,519,300	686,680,628	1,838,672	○	☞※★
☞☞◆♥		72,503,380	71,386,411	1,116,969	○	◆◀☆
합 계		33,179,293,150	32,299,866,024	879,426,126		

다만 2023년 이전 계약된 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 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이한 사항으로 전사 공지가 아닌 조달청 내부 공지 사항을 공사 담당자가 인지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송변전건설단 및 배전계획처 감리담당자는 2023년 이전 계약된 공사감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등락률 계산 시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20.6일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공지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본부 담당자 또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물가 변동에 따라 설계 변경 시 물가변동률을 잘못 산정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생조달처 ☞☞☞ 담당은 전력기술관리법 사항 등에 의한 설계 요율 등은 공사 담당이 숙지하여야 하나, 이번 지적건과 관련하여 조달청 내부 공지사항으로 실무자가 인지하여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송변전건설단장, 배전계획처장은 감리용역 설계 및 설계변경 시 혼선이 없도록 월평균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대해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전 지역·건설본부장은

- ① 공사감리용역 물가변동 반영 계약변경 현황을 추가로 파악 후 등락률 등을 잘못 산정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감리용역비를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여 주시기, (시정)
- ②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조치요구사항 요약>

지적번호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관계부서	조치부서
12	시 정 1 통 보 2	감 액 [595,664,989원]	-	송변전건설단 배전계획처 전 지역본부 전 건설본부	송변전건설단 배전계획처 전 지역본부 전 건설본부